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 경북도립대학교 종합감사 -

2021. 12.

##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 번호 | 소 관                                                                                                                          | 건 명                              | 행정상 조 치 |    |    | 재 정 상 조 치 |    |     |    |     |    |
|----|------------------------------------------------------------------------------------------------------------------------------|----------------------------------|---------|----|----|-----------|----|-----|----|-----|----|
|    |                                                                                                                              |                                  | 시정      | 주의 | 권고 | 회 수       |    | 감 액 |    | 추 징 |    |
|    |                                                                                                                              |                                  |         |    |    | 건         | 금액 | 건   | 금액 | 건   | 금액 |
| 계  |                                                                                                                              | 8건                               | 3       | 5  | 0  | 0         | 0  | 0   | 0  | 0   | 0  |
| 1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제적학생 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미반환 부적정         | 1       |    |    |           |    |     |    |     |    |
| 2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미허가 공무외국외여행 부적정                  |         | 1  |    |           |    |     |    |     |    |
| 3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         | 1  |    |           |    |     |    |     |    |
| 4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건축물 권리보전 소홀                      | 1       |    |    |           |    |     |    |     |    |
| 5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소홀                  |         | 1  |    |           |    |     |    |     |    |
| 6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정수용품 취득 부적정                      | 1       |    |    |           |    |     |    |     |    |
| 7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건강검진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공사 사용 부적정 |         | 1  |    |           |    |     |    |     |    |
| 8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관리용역비 집행 부적정                     |         | 1  |    |           |    |     |    |     |    |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제적학생 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미반환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도립대학교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북도립대학교 □□□□□ 및 □□□에서는 제적학생에 대한 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반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북도립대학교 학칙」 제88조에 따르면 납부한 납입금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고 되어있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할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또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르면 자퇴, 휴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해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반환금액을 산정 장학금을 반환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 및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북도립대학교 □□□□□ 및 □□□에서는 [표]와 같이 휴학 후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에 대해서 등록금 및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제적학생 등록금 미반환 현황

(단위 : 원)

| 연<br>번 | 대상학생 |    |    | 등록금 납부 및 학적변동 현황 |           |             | 제적 사유 및 미반환 금액 |     |           |                                                  | 비고            |
|--------|------|----|----|------------------|-----------|-------------|----------------|-----|-----------|--------------------------------------------------|---------------|
|        | 학과   | 학번 | 성명 | 납부일              | 납부금액      | 학적변동일       | 제적일            | 사유  | 금액        | 산정근거                                             |               |
|        | 계    |    |    |                  |           |             |                |     | 9,049,050 |                                                  |               |
| 1      |      |    |    | 2018.02.08.      | 1,233,800 | 2018.04.24. | 2019.04.01.    | 미복학 | 862,530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전액 본인부담       |
| 2      |      |    |    | 2015.02.26.      | 1,076,900 | 2015.02.26. | 2020.04.09.    | 미복학 | 1,076,900 | 전액(학기개시일 전)                                      | 국가장학금 1유형(전액) |
| 3      |      |    |    | 2016.08.25.      | 1,233,800 | 2016.08.24. | 2020.04.09.    | 미복학 | 1,233,800 | 전액(학기개시일 전)                                      | 국가장학금 1유형(전액) |
| 4      |      |    |    | 2019.02.11.      | 1,233,800 | 2019.03.28. | 2020.04.09.    | 미복학 | 1,078,160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전액 본인부담       |
| 5      |      |    |    | 2019.03.14.      | 1,233,800 | 2019.02.15. | 2020.04.09.    | 미복학 | 1,233,800 | 전액(학기개시일 전)                                      | 국가장학금 1유형(전액) |
| 6      |      |    |    | 2017.09.05.      | 1,233,800 | 2017.08.22. | 2020.09.28.    | 미복학 | 1,233,800 | 전액(학기개시일 전)                                      | 국가장학금 1유형(전액) |
| 7      |      |    |    | 2018.03.14.      | 1,071,900 | 2018.02.22. | 2021.03.30.    | 미복학 | 1,071,900 | 전액(학기개시일 전)                                      | 국가장학금 1유형(전액) |
| 8      |      |    |    | 2019.02.21.      | 1,233,800 | 2019.03.18. | 2021.03.30.    | 미복학 | 1,078,160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국가장학금 1유형(전액) |

### 조치할 사항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은

해당 제적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반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경북도립대학교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반환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미허가 공무원국외여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도립대학교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되어있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의 2에 따르면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휴가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공무원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소속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북도립대학교 □□□□□ □□ □□□ 등 3명은 [표]와 같이 휴가 등 복무처리 없이 공무원국외여행을 실시하였다.

[표] 복무 미처리 공무원국외여행 현황

| 연번 | 학과 | 직급 | 성명 | 출입국 일자                   | 휴가 등<br>복무처리<br>여부 | 비고 |
|----|----|----|----|--------------------------|--------------------|----|
| 1  |    |    |    | 2020.2.1. ~ 2020.2.17.   | 부                  |    |
| 2  |    |    |    | 2018.6.23.~2018.6.28.    | 부                  |    |
|    |    |    |    | 2018.12.17.~2018.12.19.  |                    |    |
|    |    |    |    | 2019.1.7.~2019.1.9.      |                    |    |
|    |    |    |    | 2019.1.28.~2019.2.2.     |                    |    |
|    |    |    |    | 2019.2.18.~2019.2.21.    |                    |    |
| 3  |    |    |    | 2019.8.18. ~ 2019.8.22.  | 부                  |    |
|    |    |    |    | 2018.12.17.~ 2018.12.19. |                    |    |
|    |    |    |    | 2019.8.20. ~ 2019.8.24.  |                    |    |

### 조치할 사항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은

앞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도립대학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도립대학교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 검사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임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임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임회하에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0. 12. 24. ‘2020년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자검사 대상 시설공사 23건에 대하여 정기적인 하자검사 23회 및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공종에 대한 최종검사 14회를 실시하지 않아 하자 발생 여부의 확인도 할 수 없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등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도립대학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도립대학교 □□□□□에서는 [표 1]과 같이 “경북도립대학교 □□□□ 신축공사”를 2020. 1. 20. ‘□□□□ 주식회사 대표 □□□’과 계약하고 2020. 3. 4. 완료하였다.

[표 1] 시설공사 현황

| 사업명                  | 사업내용   | 공사기간                     | 사업비(천원) |        |     | 도급자   | 비고 |
|----------------------|--------|--------------------------|---------|--------|-----|-------|----|
|                      |        |                          | 계       | 도급액    | 관급액 |       |    |
| 경북도립대학교<br>□□□□ 신축공사 | 99.81㎡ | 2020.1.21.~<br>2020.3.4. | 54,900  | 54,900 | -   | □□□□□ |    |

### 1. 건축협의 부적정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착공 전 허가권자와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경북도립대학교 □□□□ 신축

공사”를 추진하면서 착공 전 미리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불법건축물이 건축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축허가제도의 제정 취지가 훼손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표 2] 공용건축물 협의 현황

| 공사명                  | 사업내용   | 착공일        | 준공일       | 건축협의일      | 부적합 내용  |
|----------------------|--------|------------|-----------|------------|---------|
| 경북도립대학교<br>□□□□ 신축공사 | 99.81㎡ | 2020.1.21. | 2020.3.4. | 2020.4.13. | 건축협의 지연 |

### 2.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형공공성 건축물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 지붕공사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경북도립대학교 □□□□ 신축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정상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등 계약의 담보책임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3. 건축물 권리보전 조치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은 재산관리관으로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이 실체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상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99.81㎡를 증축하면서 공사가 완료된 2020. 5. 25. 공사완료 통보를 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었으나,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권리보전에 필요한 등기 조치를 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건축물 등기 등 권리보전 소홀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소홀  
소 관 청 경북도립대학교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북도립대학교에서는 2019. 7월부터 2021. 6월까지 홈페이지 등에 14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공고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 1. 구직자에 대한 채용서류 반환 고지의무 소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근로자의 채용을 공고할 때에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과 절차를 공고문을 통하여 알려, 구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계획(안)”<sup>1)</sup>을 수립하면서,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안)을 첨부하여 □□□□에

1) 산학협력단-36(2019. 10. 16.)

근로자 채용을 의뢰하였고, □□□□에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아래 [표 1]과 같이 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

[표 1] 구직자에 대한 채용서류 반환 고지의무 소홀

| 공고일자          | 공고문 제목                               | 근무부서/채용분야       | 채용인원 | 비고                         |
|---------------|--------------------------------------|-----------------|------|----------------------------|
| 2019. 10. 21.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br>[경북도립대 공고 제2019-53호] | □□□□□/평생교육 업무보조 | 1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2.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빙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의 경우 담당자가 이를 직접 확인·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제출 요구를 지양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외 1건<sup>2)</sup>을 수립하면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서류에 포함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실이 있다.

[표 2]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 현황

| 공고일자        | 공고문 제목                                    | 근무부서/채용분야     | 채용인원 | 비고         |
|-------------|-------------------------------------------|---------------|------|------------|
| 2019. 7. 1.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br>[경북도립대 공고 제2019-36호] | □□□□□/조리업무 관리 | 1명   | 주민등록 초본 징구 |
| 2020. 3. 2.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br>[경북도립대 공고 제2020-12호]      | 축산과/행정업무 보조   | 1명   | 주민등록 초본 징구 |

### 조치할 사항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은

앞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4436(2019. 6. 28.), 동-1532(2020. 3. 2.)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정수물품 취득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도립대학교

관 계 부 서 □□□□□, □□□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춰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정수 관리대상물품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정수관리대상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 회계과로부터 정수승인을 받아서 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확정된 후 정수물품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 □□□에서는 [표]와 같이 정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디오 프로젝터 등 정수물품(3종, 12개, 42,032천 원)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표] 미승인 정수물품 취득 현황

(단위 : 개, 천 원)

| 년도   | 관리부서  | 품 명     | 수량 | 정수물품 취득내역    |        | 정수승인<br>여부 |
|------|-------|---------|----|--------------|--------|------------|
|      |       |         |    | 일자           | 금액     |            |
| 계    |       |         | 12 |              | 42,032 |            |
| 2019 | □□□□□ | 냉난방기    | 7  | 2019. 7. 31. | 14,319 | 미승인        |
| 2020 | "     | "       | 2  | 2020. 3. 19. | 13,033 | "          |
| "    | □□□   | 무정전전원장치 | 1  | 2020. 7. 7.  | 4,110  | "          |
| "    | □□□□□ | 냉난방기    | 1  | 2020. 7. 10. | 5,205  | "          |
| "    | □□□   | 비디오프로젝터 | 1  | 2020. 8. 26. | 5,365  | "          |

### 조치할 사항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은

정수승인 보완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요청 등 미승인 정수물품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건강검진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공가 사용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도립대학교  
관 계 부 서 □□□□□, □□□, □□□  
내 용

### 1. 건강검진 등을 위한 공가 사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제7조의2<sup>3)</sup>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2017. 10. 19. 법률 제1478호)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8. 7. 1.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제99조<sup>4)</sup>에 따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소속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감사일 현재, 해당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일 현재,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강검진 등을 위한 공가는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 등을 할 때에만 허가받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공가를 허가받지 않아야 하며,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가가 아닌 병가를 허가받아야 하고,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허가를 받았으나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공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건강검진 등을 위한 공가 사용에 관하여 점검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경북도립대학교 □□□□□ □□□□□ □□□은 2018. 8. 17.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이 아닌 신병에 따른 개인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위해 공가를 허가받았고,

경북도립대학교 □□□ □□ □□□은 2018. 8. 14.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이 아닌 개인적인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허가받았고, 2019. 4. 9.에는 공가 사유가 될 수 없는 “병원”의 사유로 4시간의 공가를 허가받았으며,

경북도립대학교 □□□□□ □□□ □□□는 2020. 10. 30.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허가 받은 후, 해당 일자에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가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표 1] 건강검진 등을 위한 공가 사용 부적정 현황

| 연번 | 소속               | 직급 | 성명 | 공가 허가일                | 공가 대상 건강검진일                  | 비고                                                               |
|----|------------------|----|----|-----------------------|------------------------------|------------------------------------------------------------------|
| 1  | 경북도립대학교<br>□□□□□ |    |    | 2018. 8. 17.<br>(1일)  | 2017. 4. 25.<br>2019. 2. 15. | 공가 사용 대상 건강검진 연도가 아님<br>(신병에 따른 개인적인 건강검진)                       |
| 2  | 경북도립대학교<br>□□□   |    |    | 2018. 8. 14.<br>(1일)  | 2018. 7. 2.                  | 공가사용 대상 건강검진이 아님<br>(개인적인 건강검진)                                  |
|    |                  |    |    | 2019. 4. 9.<br>(4시간)  | -                            | “병원”을 사유로 공가 허가                                                  |
| 3  | 경북도립대학교<br>지방행정과 |    |    | 2020. 10. 30.<br>(1일) | 2020. 11. 6.                 | 2020. 10. 30. 공가를 취소하지 않고<br>2020. 11. 6. 공가를 다시 허가받아<br>건강검진 실시 |

## 2.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공가 사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행정안전부)<sup>5)</sup>에 따르면 공무원이 코로나19 백신(이하 “백신”이라 한다)을 접종받는 경우, 접종 당일에 접종 전·후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부여하며, 백신을 접종받고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공무원은 접종 다음날 진단서 첨부 없이 ‘1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위한 공가는 접종 당일에 한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허가 받아야 하며,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공가가 아닌 병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백신 접종을 위한 공가 사용에 관하여 점검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경북도립대학교 □□□ □□□□□□ □□□는 2021. 9. 27. 공가를 사용하지 않고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백신을 접종받은 후, 접종 다음날인 2021. 9. 28.에는 병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백신 접종을 위한 공가를 허가받았고,

경북도립대학교 □□□□□ □□□ □□□은 2021. 9. 28. 공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시간 후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접종 다음날인 2021. 9. 29.에는 병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백신 접종을 위한 공가를 허가받았다.

[표 2]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공가 사용 부적정 현황

| 연번 | 소속               | 직급 | 성명 | 공가 허가일               | 공가 대상<br>백신접종일 | 비고                  |
|----|------------------|----|----|----------------------|----------------|---------------------|
| 1  | 경북도립대학교<br>□□□   |    |    | 2021. 9. 28.<br>(1일) | 2021. 9. 27.   | 접종 다음날 병가가 아닌 공가 사용 |
| 2  | 경북도립대학교<br>□□□□□ |    |    | 2021. 9. 29.<br>(1일) | 2021. 9. 28.   | 접종 다음날 병가가 아닌 공가 사용 |

### 조치할 사항 경북도립대학교총장은

앞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가 사용 등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5)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1515(2021. 3. 31.),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통보”  
경상북도 자치행정과-5878(2021. 4. 1.)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통보”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관리용역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도립대학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도립대학교 □□□에서는 경북도립대학교 □□□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대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설치하고,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관리,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19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건물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로 되어 있고, 관리용역비(210-13목)는 기관의 시설관리 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 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반면, 관리용역비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청소 용역 등은 관리용역비가 아닌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북도립대학교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일시적인 청소 용역(7건, 35,077천 원)을 관리용역비로 집행하였다.

[표] 관리용역비 집행 부적정 내역

(단위 : 천 원)

| 연번 | 사 업 명                 | 사업기간<br>(일수)                    | 지급일자         | 계약업체 | 지급액    | 지출과목  | 적정과목    |
|----|-----------------------|---------------------------------|--------------|------|--------|-------|---------|
| 계  | 7건                    |                                 |              |      | 35,077 |       |         |
| 1  | □□□ □□□ 청소용역 실시       | 2019. 6. 26. ~ 6. 29.<br>(3일)   | 2019. 7. 4.  |      | 6,926  | 관리용역비 | 시설장비유지비 |
| 2  | □□□ □□□ 청소용역 실시       | 2019. 12. 23. ~ 12. 27.<br>(5일) | 2020. 1. 2.  |      | 6,926  | "     | "       |
| 3  | □□□□□(□□□ 분관) 청소용역 실시 | 2020. 2. 24.<br>(1일)            | 2020. 2. 27. |      | 660    | "     | "       |
| 4  | □□□ □□□ 청소용역 실시       | 2020. 8. 21. ~ 8. 25.<br>(5일)   | 2020. 8. 31. |      | 4,809  | "     | "       |
| 5  | □□□ □□□ 청소용역 실시       | 2021. 2. 24. ~ 2. 27.<br>(4일)   | 2021. 3. 10. |      | 6,943  | "     | "       |
| 6  | □□□ □□□ 청소용역 실시       | 2021. 6. 28. ~ 7. 2.<br>(5일)    | 2021. 7. 5.  |      | 6,613  | "     | "       |
| 7  | □□□ 세탁기, 건조기 청소 실시    | 2021. 8. 25. ~ 8. 26.<br>(2일)   | 2021. 9. 3.  |      | 2,200  | "     | "       |

### 조치할 사항 경북도립대학교총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